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검정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영리성 및 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독립성을 검정대행기관 지정 기준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기상관측표준화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협의 전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“(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)”을“(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항에 따른 신청서”를 “제2항에 따른 신청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, “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”을 “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.

1.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
2.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서 정하는 검정요건 및 검정설비를 갖추 것
3. 기상측기의 제작·수입 또는 설치를 업(業)으로 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을 갖추 것

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·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	법 제12조의5제1항제3호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지정 취소
라. 법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12조의5제1항제4호	업무정지 2개월	지정 취소	
마.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2조의5제1항제5호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4개월	지정 취소

별지 제3호의3서식 중 “시행규칙 제11조제1항”을 “시행규칙 제1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시행규칙 제11조제3항”을 “시행규칙 제1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)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(이하 이 조에서 “종전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”라 한다)가 제출되어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종전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는 이 규칙

시행일 전날 접수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제3조(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처분은 별표 3의5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검정대행기관의 <u>지정신청</u> 등) <신 설>	제11조(검정대행기관의 <u>지정 기준</u> 등) ①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.
	1.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
	2.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 에서 정하는 검정요건 및 검정 설비를 갖추는 것
	3. 기상측기의 제작·수입 또는 설치를 업(業)으로 하는 자로부 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을 갖추는 것
① (생 략)	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 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	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7조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검정대행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.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. 1. ~ 3. (생략)	④ ----- 제2항----- ----- -----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⑤ ----- 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---	--